

	교원 안식학기제 규정		문서번호		3-2-12	
			제정일		2010. 03. 01.	
			개정일		2016. 02. 01.	
			페이지	1/4	관리 부서	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(이하 “본 대학”라 한다)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수 중 대학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고 학문적 성과가 뛰어난 교수에게 강의와 학생지도 등 일상적인 업무수행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자격) 교수 안식학기 대상자(이하 “안식학기교수”라 한다)는 본 대학교에 만25년 이상 재직한 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에 한한다.

제3조(안식기간) 안식기간은 한 학기로 하며 시기는 정년퇴직을 하는 해당년도의 잔여 한 학기로 정한다.

제4조(신청) 안식학기를 희망하는 교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3개월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안식학기 교수 신청서 1부(별지 제 1호 서식)
2. 서약서 1부(별지 제 2호 서식)

제5조(승인) 안식학기 교수의 승인은 교무처장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.

제6조(신분보장) 안식기간 동안 교원신분을 유지하고 월 급여는 본봉, 상여금, 연구비 등을 포함한 정규월급여액을 지급한다.

제7조(안식학기 제한) 정년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10년 이내에 6개월 또는 1년의 해외연수 지원을 받은 교수는 안식학기를 신청할 수 없다.

제8조(허가취소) 안식학기기간 중 교원으로서의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교명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	교원 안식학기제 규정	문서번호	3-2-12		
		제정일	2010. 03. 01.		
		개정일	2016. 02. 01.		
		페이지	2/4	관리 부서	교무처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	교원 안식학기제 규정		문서번호	3-2-12		
			제정일	2010. 03. 01.		
			개정일	2016. 02. 01.		
			페이지	3/4	관리 부서	교무처

[별지 제 1호 서식]

안식학기 교수 신청서

교무처장	총 장

본인은 안식학기를 아래와 같이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기 간	년 월 일 ~ 년 월 일 ()일간				
안식학기 중 연락처	주소				
	연락처				
	성명		관계		
해외연수 기록	회수	기 간	연 수 국	연 수 주 제	
	1				
	2				
증빙서류 목록	1. 서약서				

년 월 일

신청인 : 직위

성명

(인)

서울여자간호대학교 총장 귀하

	교원 안식학기제 규정		문서번호	3-2-12		
			제정일	2010. 03. 01.		
			개정일	2016. 02. 01.		
			페이지	4/4	관리 부서	교무처

[별지 제 2호 서식]

서 약 서

주 소 :

성 명 :

소 속 :

직 위 :

위 본인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 까지 교수 안식학기를 수행함에 있어 교수 안식학기 제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때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.

20 년 월 일

서약인 성 명

(인)

서울여자간호대학교 총장 귀하